

제303회 임시회
2011. 9. 21(수)

검 토 보 고 서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-
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시찬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-
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9월 9일
- 회부일자 : 2011년 9월 9일

3. 제안이유

-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시 정부시설 부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제안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」 규정에 의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무상대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일원
- 면 적 : 77,977.7m² (679번지 44,897.7, 680번지 33,080)
- 건립시설 : 신약개발지원센터,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, 실험동물센터,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
- 계약내용 : 20년 무상대부

5. 검토내용

가. 무상대부 예정지의 공유재산 현황

구 분 \ 토 지	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79	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80
취득일자	2008, 12. 26	2008, 11. 13
취득금액	7,167,339,970원	5,056,571,940원
면 적	44,897.7m ²	33,080m ²
재산관리관	바이오밸리 추진단 단지개발과	바이오밸리 추진단 단지개발과
재산유형	일반재산	일반재산

나. 무상대부의 적법성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음

※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(대부료의 감면)제1항제3호

-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"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3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-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10. 12. 27일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**재단의 기금조성은**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

- 중앙정부의 출연·보조금과 현물, - 충청북도의 출연금과 현물

- 그 밖에 공공기관과 연구개발기관 등의 출연금과 현물로 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조건을 충족함

다. 검토의견(종합)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검토한바
-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·연구시설 건립부지를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」 규정에 의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무상대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
- 무상대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있음
- 다만 20년 장기간 무상대부에 따른 철저한 관리대책과 부지사용에 따른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